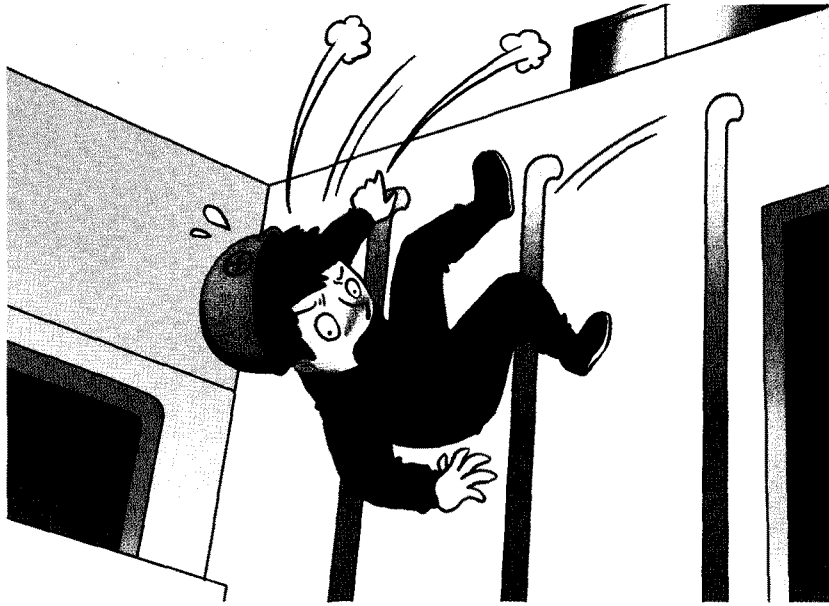


# 컨테이너 랫싱 작업중 홀드에 추락



업종 : 항만용역업  
 생산품 : 항만운수부대사업  
 기인물 : 바닥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1명



## 1. 재해개요

항만하역작업장 선석집안선박에서 피재자가 본선 랫싱 작업 중 walk way(폭 30cm)에서 홀드에 추락함. 동료작업자는 피재자가 보이지 않아 찾던 중 #18 Deck에서 홀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수술 중 사망함.

- (1) 추락방지용 안전대 사용
- (2)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설치
- (3)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위험예지활동 실시
- (4) 작업하지 않는 선창의 햇치커버 폐쇄
- (5) 관리감독자 관리감독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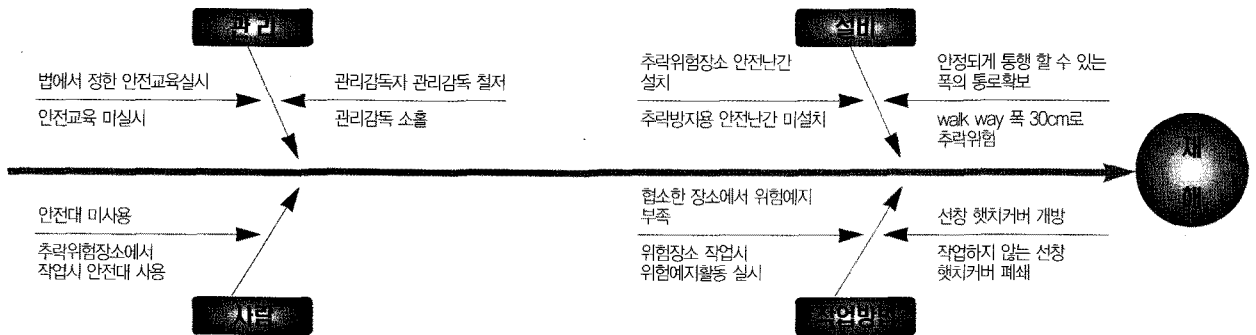
## 2. 재해원인

- (1) 추락방지용 안전대 미사용
- (2) 가설 안전난간 미설치
- (3) 협소한 장소에서의 위험예지 부족
- (4) 작업하지 않는 선창 햇치커버 개방
- (5) 관리감독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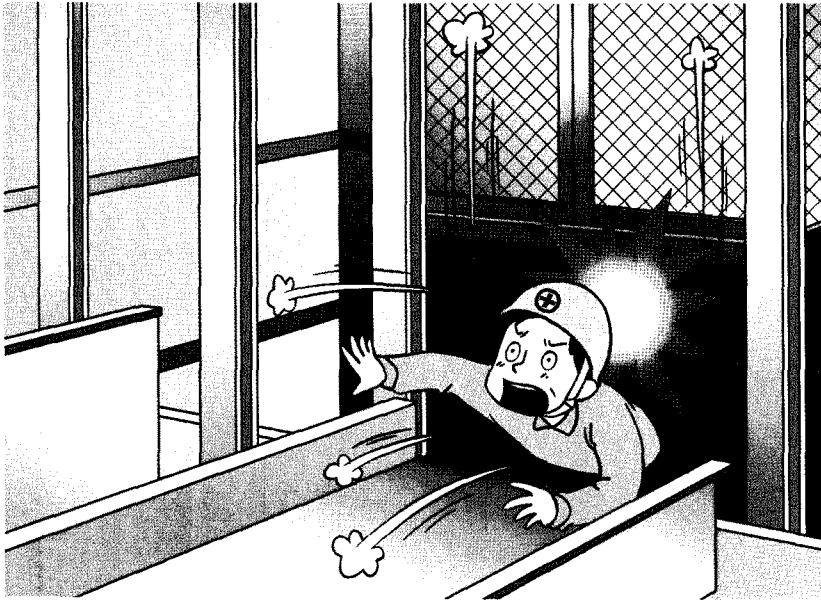
## 4. 법 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예방대책



# 하강하는 케이지에 협착



업종 : 산업용세탁업  
 생산품 : 세탁물 세탁  
 기인물 : 케이지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명



## 1. 재해개요

세탁 후 반 건조된 세탁물을 이송하는 컨베이어의 끝부분에 세탁물이 걸리자 이를 수작업으로 꺼내려다 컨베이어 끝부분 피트로 추락. 걸린 세탁물이 제거되자 컨베이어 끝 케이지가 하강하여 바닥과 하강하는 케이지 사이에 피재자 협착됨. 동료근로자가 이를 목격하고 119구조대에 신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후송 직후 사망함.

## 2. 재해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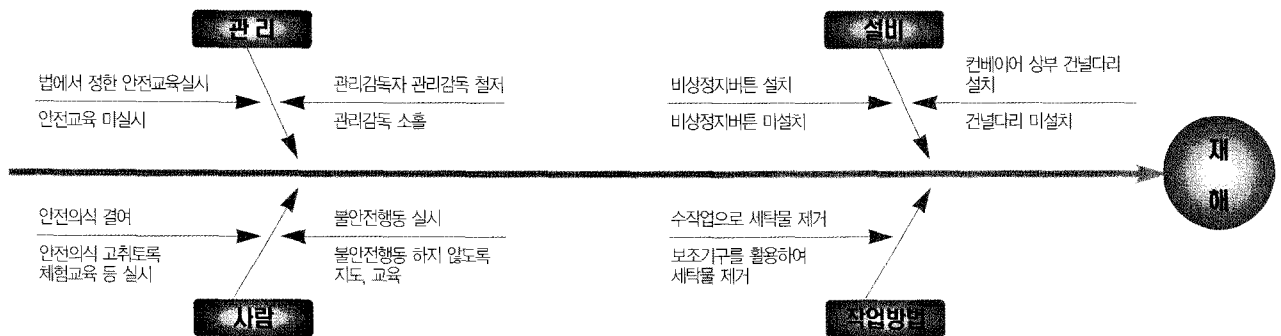
- (1) 컨베이어 상부 건널다리 미설치
- (2) 보조기구를 활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세탁물 제거
- (3) 가동중인 컨베이어 상부 통행
- (4) 비상정지버튼 미설치
- (5) 안전교육 미 실시
- (6) 관리감독 소홀

## 3.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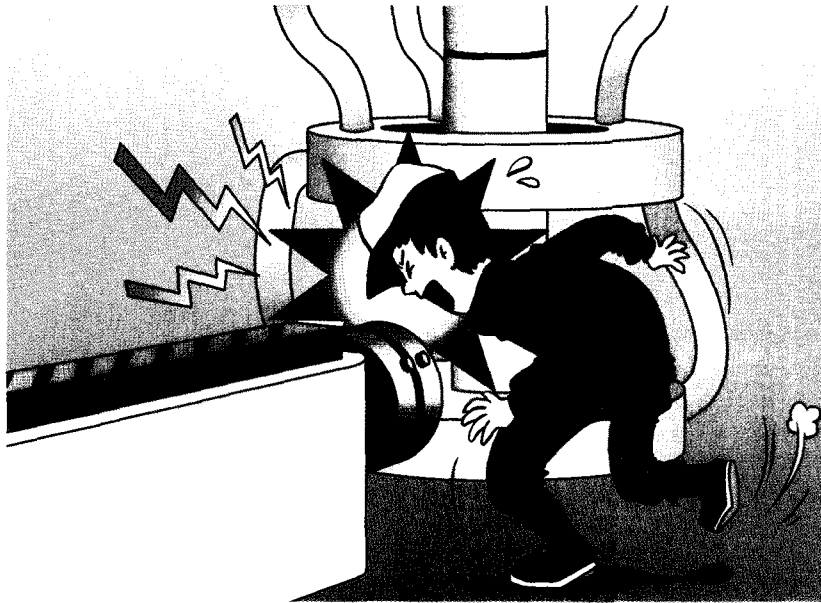
- (1) 컨베이어 상부 건널다리 설치
- (2)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세탁물 제거
- (3) 비정상작업시 주전원 차단
- (4) 컨베이어 및 케이지의 급정지버튼 설치
- (5) 정기 안전교육 실시
- (6) 관리감독자 관리감독 철저

## 4. 법 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압출기 헤드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



업종 : 화학제품제조  
 생산품 : 플라스틱 필름  
 기인물 : 압출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1명



## 1. 재해개요

플라스틱 필름을 사출하는 공장의 압출작업장에서 순간정전으로 불량이 발생하자 불량물을 제거하고 급하게 재가동 하던 중 압출기 헤드 앞쪽에서 미끄러지며 머리부위를 압출기 헤드 가열단자에 접촉, 감전으로 쓰러짐. 주변 동료가 이를 목격하고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함.

## 2. 재해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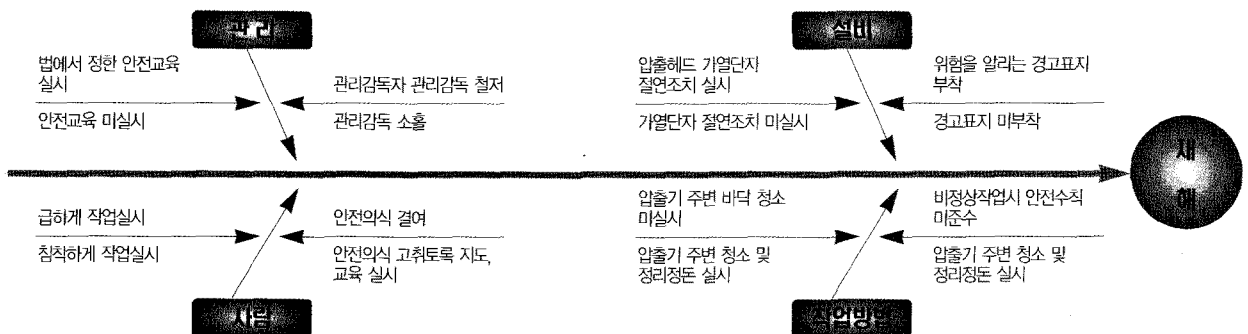
- (1) 가열단자 절연조치 미실시
- (2) 압출기 주변 바닥 청소 미실시
- (3) 비정상작업시 전원차단 미실시
- (4) 근로자 안전의식 결여
- (5) 급하게 작업 실시
- (6) 현장 관리감독 소홀

## 3.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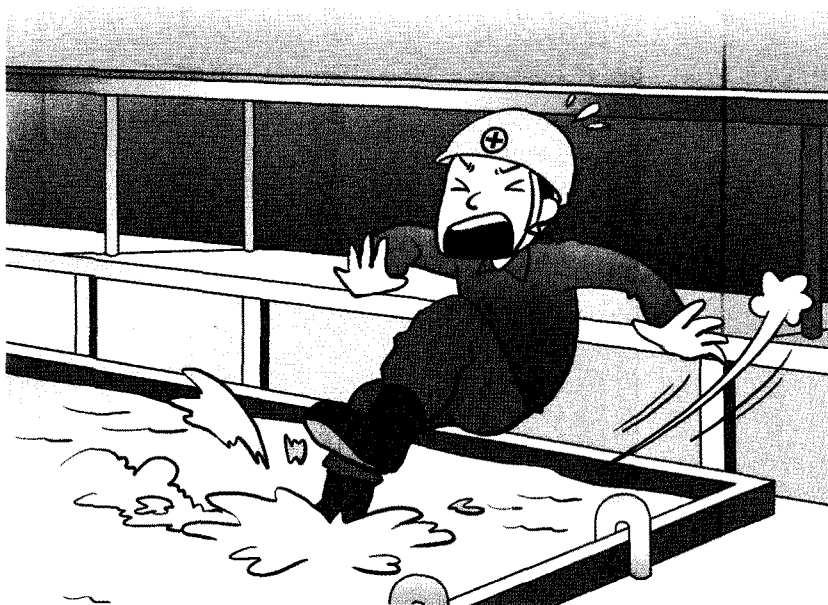
- (1) 가열단자에 절연애자 부착 등 절연조치 실시
- (2) 압출기 주변 미끄러짐 없도록 청소, 정리정돈 실시
- (3) 비정상작업시 주전원 차단
- (4) 압출기 주변 경고표지 부착으로 안전의식 고취
- (5) 침착하게 작업 실시
- (6)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 철저

## 4. 법 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전처리 용액탱크에 추락하여 화상



업종 : 도금업  
 생산품 : 도금제품  
 기인물 : 침전조  
 재해유형 : 화상  
 피해정도 : 사망 1명



## 1. 재해개요

도금작업장 야간작업 시 제품을 1차전처리하기 위해 침전조 탱크에 넣었으나 제품이 침전조 틀에 걸려 침적되지 않음. 피재자가 침전조 걸린 부분에 다가가 난간을 잡고 수작업으로 침적시키려다 미끄러지며 난간대 사이로 침전조(주성분 염산)에 빠져 전신 화상을 입음. 동료근로자들이 구조하여 현장에서 수돗물로 세척 후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치료중 사망함.

## 2. 재해원인

- (1) 난간의 간격이 넓음
- (2) 보조기구 활용않고 수작업으로 작업실시
- (3) 통로 주변이 침전액 등으로 미끄러움
- (4) 침전액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5) 야간작업 시 관리감독자 미배치

## 3. 예방대책

- (1) 근로자가 빠지지 않는 구조의 안전난간 설치
- (2) 막대등의 보조기구 활용
- (3) 통로 주변 미끄러짐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수시청소 실시
- (4) 침전액에 대한 MSDS확보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5) 야간작업시에도 관리감독자 배치

## 4. 법 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